

예산총칙

2018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17,528,431	12,525,853
일반회계	397,109,274	11,913,278
특별회계	20,419,157	612,575
기타특별회계	20,419,157	612,57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66,832	20,005
주차장 특별회계	11,167,380	335,021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894,684	26,841
기반시설 특별회계	1,317	40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828,135	24,844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26,473	9,794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6,534,336	196,03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369,784천원(일반 3,106,900천원, 재해·재난목적 21,262,884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8년도 지방채 한도액은 2,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정규직 전환에 관련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무원근로자 인건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예산서 자원표기

[국] 국고보조금, [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 기금

[특] 특별교부세, [별] 특별조정교부금, [시] 시비보조금, [구] 자체자원